

**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 
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**

1996. 9. 10.  
도시건설위원회

**1. 심사결과**

- 가. 제출일자 : 1996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8월 2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43회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('96. 9. 10) 상정의결

**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정비국장 이종현)**

**가. 개정이유**

-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요금체계와 민영노외주차장시간 단위등 서울시와 일관성 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관리의 형평과 효율적인 주차장관리가 되도록 개정하여 시민 편의위주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.

**나. 주요개정내용**

- 제12조(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등)
  - 노외주차장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%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4으로 개정
- 제13조(주차시간단위)
  -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 단위를 30분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5분 단위에서 10분단위로 세분화
- 제2조제1항과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·4급지 요금개정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유재한)**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년 2월 임시회의시 제정되어 공영및 민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주차시간을 조정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의 형평을 기하며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- 1) 조례 제12조(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)의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발급에 따른 요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이며
- 2) 조례 제13조(주차시간 단위)민영주차장의 노외주차 시간단위를 최초 단위 30분 이내로 하고 초과할때마다 15분 단위로 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세분하여 주민에 편의제공
- 3)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3·4급지가 1·2급지와 격차가 크므로 재조정하여 격차폭을 줄여 형평을 기하기 위함.

**4. 심사결과 : 부결(반대8표, 기권2표)**

부결이유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입장에서 3·4급지가 없는 지역이고 개정안이 현실에 맞지 않아 부결됨.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 
번호

76

제출년월일 : 1996. 8. 19.  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요금체계와 민영노외주차장 주차시간 단위등 서울시와 일관성있게 조정하여 주차장관리의 형평과 효율적인 주차장관리가 되도록 개정하여 보다 시민편의 위주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.

### 2. 주요 개정내용

- 제12조(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정수방법등)
  - 노외주차장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%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
- 제13조(주차시간 단위)
  -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5분 단위에서 10분단위로 세분화
- 제2조1항과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·4급지 요금개정

### 3. 참고사항

- 조례개정(안) : 따로붙임.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, 개별용달,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

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, 3·4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%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제13조중 “15분단위로”를 “10분단위로”로 한다.

제2조 제1항의 <별표 1>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3급지, 4급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급지	400원	200원	200원	3천원	5만원	-	300원	150원	4만원	2만원
4급지	200원	100원	100원	2천원	3만원	2만원	200원	100원	3만원	2만원

※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·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은 4만원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	
<별표 1>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(제2조 1항 관련)					<별표 1>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(제2조 1항 관련)						
구분	노 상 주 차 창		노 외 주 차 장			구분	노 상 주 차 창		노 외 주 차 장		
	2시간 초과	월 정 기 권	월 정 기 권				2시간 초과	월 정 기 권	월 정 기 권		
	1구획 15분	주 간	야 간	주 간	야 간		1구획 15분	주 간	야 간	주 간	야 간
3급지	—	4만원	—	4만원	4만원	3급지	200원	5만원	—	4만원	2만원
4급지	—	4만원	4만원	2만원	2만원	4급지	100원	3만원	2만원	3만원	2만원
※ <신 설>					※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·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은 4만원으로 한다.						